2024년 탄소중립 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공고

충남지역 탄소중립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에너지효율화·절감 컨설팅 등과 관련 제품(서비스)의 사업화(상용화) 지원. 선도기업(혁신기업)을 발굴·육성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4. 4. .

(재)충남테크노파크원장

1. 사업개요

○ 기 간 : 2024. 4. ~ 12월까지

○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소재지가 충남인 해당산업분야 관련 중소·중견기업

- 해당산업분야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	(제2조제2호) "재생에너지"란 햇빛ㆍ물ㆍ지열(地熱)ㆍ강수(降水)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태양에너지 나. 풍력다. 수력 라. 해양에너지 마. 지열에너지 마. 지열에너지 바.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. 폐기물에너지(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.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너지
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	• (제2조제1호의2) "재생자원"이란 「폐기물관리법」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

※ 단순유통업은 지원에서 제외

○ 지원규모 : 6개 과제 내외, 과제당 최대 70백만원 이내 차등 지원

※ VAT 제외, 지원금의 10%이상 자부담

- 지원제외대상 : 아래에 항목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
- ▷ 접수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의무사항을 불이 행하고 있는 기관(기업)
- ▷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청한 기술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완료한 경우
- ▷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, 대표자, 총괄책임자가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
- ▷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자
 - 기업의 부도
 - 국세·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)
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(가결산 포함)
 -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
2. 주요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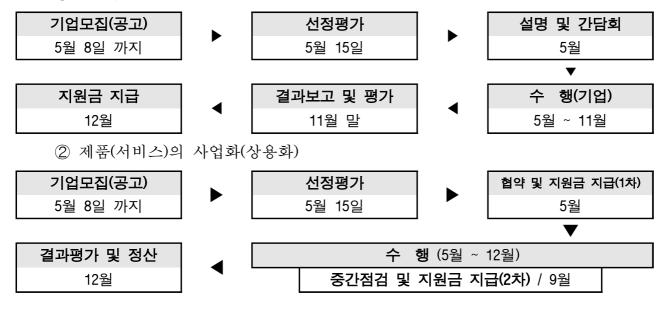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: '컨설팅 + 사업화' 패키지 지원

분 야	지 원 내 용		
컨 설 팅 (필수)	- 에너지효율화, 원・부자재 관리, 공정개선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		
사 업 화 (택1)	① 탄소중립을 위한 해당산업분야 시제품제작 혹은 인증취득 혹은 시험&평가 ② 탄소중립을 위한 해당산업분야 제품(서비스)의 사업화(상용화)		

○ 선정평가 : 산·학·연 전문가에 의한 평가

구 분	평가항목	세부 평가내용		
사업성(50점)	기업 역량	· 신청기업 역량(인력, 경험, 경영능력 등)		
	제품 시장성	· 제품(서비스)의 시장진출 가능성	15	
	성장 가능성	· 향후 기업 성장 가능성 - 고용, 매출(수출) 증대 가능성 등		
기술성(30점)	기술 경쟁력	·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제품(서비스)의 우수성	30	
사업비(20점)	사업비 활용	사업비 활용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		
합 계			100	

- 지원결정 : 평가위원 전체 평균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순
- 추진절차
 - ① 시제품제작 혹은 인증취득 혹은 시험&평가



※ 일정은 내외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3.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

○ 접수기간 : 공고일로부터 ~ 2024. 5. 8(수) 16시 이내 제출분

※ 접수 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. 접수 마감 시 제출 불가

o 접수방법 : 담당자 이메일 접수, chaeunbae@ctp.or.kr (하나의 PDF 파일로 접수)

○ 제출서류

연번	제 출 서 류	부수	비고
1	신 청 서 및 붙임 서류 등	1부	CTP 제공 서식
2	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	1부	-
3	수행기관 중소기업 확인서	1부	-
4	수행기관 재무제표(최근 3년간)	1부	-
5	수행기관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	1부	-
6	인증 및 특허 사본(해당 시)	1부	-

4. 문의처

○ 담 당 자 : 충남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 차은배 책임(☎ 041-338-7958)

○ 주 소 :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-22 전문건설회관 603호 에너지센터